

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ㄱ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ㄹ~ㅅ (생략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ㄱ----- ----- -----</p> <p>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ㄹ~ㅅ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ㄱ----- ----- -----</p> <p>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ㄹ~ㅅ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ㄱ증지의 종류는 10원권, 40원권, 50원권, 60원권, 100원권, 200원, 300원권, 500원권, 1,000원권, 2,000원권, 5,000원권, 10,000원권으로 한다. 단, 계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입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.</p> <p>ㄹ~ㅅ (생략)</p>	<p>제6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ㄱ----- ----- 200원 ----- ----- -----</p> <p>ㄹ~ㅅ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ㄱ----- ----- 200원 ----- ----- -----</p> <p>ㄹ~ㅅ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증지인수 및 보관) ㄱ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출납원 또는 세외수입계장(이하 "출납원"이라 한다)과 분임정수관(분임경리관)이 입회하여야 한다.</p> <p>ㄹ~ㅅ (생략)</p>	<p>제7조(증지인수 및 보관) ㄱ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출납원 또는 세외수입계장(이하 "출납원"이라 한다)과 분임정수관(분임경리관)이 입회하여야 한다.</p> <p>ㄹ~ㅅ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증지인수 및 보관) ㄱ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출납원 (삭 제) (이하 "출납원"이라 한다)과 분임정수관(분임경리관)이 입회하여야 한다.</p> <p>ㄹ~ㅅ (현행과 같음)</p>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